

보도자료

2010년 6월 11일(금) 오전 06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안건]
다. 시장조사과 이창희과장(2630)
[보고안건]
다. 이용자보호과 이재범과장(2670)

2010년 제34차 위원회 결과 대변인 브리핑

- 6월 10일(목) 15시 30분에 속개된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다. SK텔레콤(주) 및 (주)KT의 USIM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 SK텔레콤(주) 및 (주)KT가 ▲USIM 이동이 차단되는 ‘휴대폰 보호 서비스’의 무단 가입, ▲이동전화 개통 후 일정 기간(최대 2개월) USIM 이동 차단, ▲USIM 단독판매·개통 거부, ▲단말기의 해외 USIM 잠금장치 설정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 SK텔레콤과 KT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금지행위)제1항제4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동법 제37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및 동법 제37의2(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등)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 각 사별 과징금 결정금액 : SK텔레콤 20억원, KT 10억원

[보고안전]

다. 「전기통신서비스·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
(첨부 참조)

- 요금고지서로 이용자가 자신이 실제로 사용한 만큼 요금이 부과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이용자 민원 다수 발생함에 따라,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제정(안)을 마련하여 보고함

※ '09년 방통위에 접수된 전체 통신민원 총 25,670건 중 부당요금 관련 민원 7423건(28%)차지

[첨부]

「전기통신서비스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고시)안

1. 주요 내용 (요금고지서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 행위 유형 및 기준)

- ① 요금고지서에 ‘필수고지사항(과금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와 적절한 요금제를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을 충분히 기재하지 않은 경우
- ② 상품광고 등을 과도하게 기재하여 이용자의 필수고지사항에 대한 이해를 현저히 어렵게 하는 경우
- ③ 필수고지사항을 평균적인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용어로 항목별로 구분 기재하지 않은 경우

2. 향후 일정(안)

-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위원회 의결 (7월)
- 요금고지서 제공 현황 실태점검 및 개선 추진 (8월)

〈붙임〉 전기통신서비스·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
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안)

●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0-00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3 IV. 제1호, 제8호,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3 제2호에 따라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0월 0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기통신서비스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3 IV. 제1호, 제8호,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3 제2호에 따라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전기통신서비스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요금고지서(이하 ‘요금고지서’라고 한다)와 관련한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필수고지사항) ① 요금고지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고지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이용자가 자신이 실제로 사용한 만큼 요금이 부과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
2. 이용자가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대별 통화량 비중, 주요 통화상대방의 전화번호별 통화량 비중 등에 관한 정보 단, 이는 해당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에 한하여 제공
-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 관련 정보 중 요금제 설명 등 적정 요금제 선택을 위해 필요한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필수고지사항의 세부 내용은 별표를 참고로 한다. 단, 서비스유형 또는 요금체계 등의 변경에 따라 필수고지사항의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

제3조(요금고지서 관련 이용자이익저해행위)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고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용자이익 저해 행위에 해당한다.

1. 이용자가 자신이 사용한 만큼 요금이 부과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금고지서에 필수고지사항을 서비스 유형별로 충분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 단, 필수고지사항 중 이용자가 제공받기를 원하지 않는 등 기재하는 것이 오히려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용자가 필수고지사항을 이해하는데 현저히 방해가 될 정도로 요금고지서에 상품광고 등 필수고지사항과 관계없는 정보를 과도하게 기재하는 경우

3. 평균적인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용어를 사용하여 필수고지사항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요금고지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제4조(적용제외) 사업자가 제3조의 내용 중 일부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면 이를 이용자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 필수고지사항 중 특정항목의 분량이 방대하여 사업자가 통상 제공하는 요금고지서 지면에 전부 기재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과금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요금고지서 발송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것이 인정되는 경우
3. 결합상품 할인 내용의 복잡성으로 인해 상세할인내역을 전부 기재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사업자가 필수고지사항을 요금고지서에 기재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필수고지사항>

서비스 유형		필수고지사항 세부내용
전기통신서비스와 IPTV서비스		○ 각 서비스 유형별 선택된 요금제 명칭과 설명 ○ 요금 할인내역 관련 정보(기본료, 할인율, 할인율이 적용된 금액 등)
이동전화 서비스	음성통화료	○ 종량제 이용자 : 요율이 차등 적용되는 시간대별(예 : 평상/할인/심야, 평일/주말)통화량 비중, 주요 통화상대방의 전화번호별 통화량 비중 ○ 정액제 이용자 : 무료제공량, 사용량, 초과사용량, 총사용량
	데이터통화료	○ 종량제 이용자 : 데이터서비스 유형별 데이터 이용량, 이용요금 ○ 정액제 이용자 : 무료제공량, 사용량, 초과사용량, 총사용량
	정보이용료	○ 이용시각, 콘텐츠명, 이용요금 정보
	소액결제	○ 결제일자, 이용 사이트(서비스), 결제금액 정보
유선전화 서비스	음성통화료	○ 종량제 이용자 : 요율이 차등 적용되는 시간대별(예 : 평상/할인/심야) 통화량 비중, 월평균통화요금, 주요 통화 상대방의 전화번호별 통화량 비중 ○ 정액제 이용자 : 무료제공량, 사용량, 초과사용량, 총사용량